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26

발의연월일: 2024. 8. 2.

발 의 자:민병덕・김재원・조 국

이기헌 · 황정아 · 김성환

천준호 · 장철민 · 황명선

이수진 · 강준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, 「유 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」은 그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 임.

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은 유사하나 법률의 문제로 교육·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,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.

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,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·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 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 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 ·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2조)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재원(財源)의"를 "재원(財源) 및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재원의"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행정 운영"을 "행정 운영 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자치단	제1조(목적)		
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			
관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. 이			
하 같다)을 설치·경영하는 데			
필요한 <u>재원(財源)의</u> 전부 또는	<u>재원(財源) 및 「영유아</u>		
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	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이 운		
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	영되는 데 필요한 재원의		
목적으로 한다.			
	<u>,</u>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
1. "기준재정수요액"이란 지방	1		
교육 및 그 <u>행정 운영</u> 에 관한	<u>행정 운영 등</u>		
재정수요를 제6조에 따라 산			
정한 금액을 말한다.		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		